### [서식 예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(공동소유토지의 점유취득시효)



# 소 장

원 고 1. 김〇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박① ( 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3. 박②○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4. 박③○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김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박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원고들에게,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214.877㎡ 중 별지도면 표시 ㄱ\\

  □, □, 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29.7522㎡에 관하여, 피고\\

  ◇◇는 9.9174/214.877 지분, 피고 박◇◇는 19.8348/214.877 지분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1999. 2. 28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소외 망 박◉◉는 소외 ◉◉◉로부터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 대 330.58 m²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1층 주택 56.74m²를 1979. 2. 28. 매수하였는데,위 토지의 인접대지인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214.877m²(다음부터 이사건 토지라 함)중 별지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선내 ⑦부분 29.7522m²(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함)가 위 주택의 담장안에 위치하여 소외 망 박◉◉는 이 사건 부동산도 자신의 소유로 알고서 계속점유하여 왔습니다.
- 2.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김◇◇는 9.9174/214.877 지분, 피고 박◇◇는 19.8348/214.877 지분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.
- 3. 소외 망 박◉◉는 19○○. ○. ○. 사망하고, 그의 처인 원고 김○○, 자녀들인 원고 박①○, 박②○, 박③○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소외 망박◉◉의 재산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.
- 4. 그렇다면 소외 망 박◉◉는 1979. 2. 28.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,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, 소외 망 박
  ◉◉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. 2. 28. 이 사건 토지부분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고,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각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외 망 박◉◉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각 상속분에 따라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- 5.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 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





1. 갑 제1호증의 1, 2

1. 갑 제2호증의 1, 2

1. 갑 제3호증

1. 갑 제4호증

1. 갑 제5호증

각 토지등기사항증명서

각 토지대장등본

건물등기사항증명서

건축물대장등본

지적도등본

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송달료납부서

각 1통

2통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1. 김〇〇 (서명 또는 날인)

2. 박① ○ (서명 또는 날인)

3. 박②○ (서명 또는 날인)

4. 박③○ (서명 또는 날인)

#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도 면

	7 L	
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	ㅇㅇ시	ㅇㅇ구 ㅇㅇ동 ㅇㅇ
	<b>7</b>	
330.58 m²	29.7522 m²	185.1248 m²
330.36III	29.7322III	103.1240111
	근 ㄷ	
	ו	



# 원고별 상속지분표

성명	상속지분	상속분	비고
김ㅇㅇ	3/9	1.5	소외 망 박◉◉의 처
박①0	2/9	1	소외 망 박◉◉의 자
박②0	2/9	1	소외 망 박◉◉의 자
박③ㅇ	2/9	1	소외 망 박◉◉의 자

	↑ 메 기 〒		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3)참조		
	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•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	·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		
	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		
	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,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수는 없는 법리이므로, 그 토지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		
	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(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다		
	# 변역전공기절자들 이행할 의무가 있음(대립된 1997. U. 15. 전고 97대 1730 판결).		
	·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		
	공존하는 것뿐이고,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		
	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		
	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 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음(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3다32880, 93 다3 판결). 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합(대법원 1997. 3. 11. 선고		
  기 타			
/	96다37428 판결).		
	·토지를 매수·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		
	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		
	그가 매수・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		
	실적으로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		
	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9다		
	58570 등 판결). 다만,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		
	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, 「외견상 그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」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, 이 경우 매도인이 그 초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, 따라서 이러한 주택 및 그 부지인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의 침범부분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(他主占有)로 보아야 할 것인(대법원 1909 5 25 성고 98다62046 파결 2000 2 22 성고 99다		
	것임(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다62046 판결, 2000. 2. 22. 선고 99다		
	68164 판결).		

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등기·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소멸시효
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(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다9797 판결),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 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, 부동산에 관하여 인 도.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 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 로,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 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(대법원 1999. 3. 18. 선고 98다 32175 판결, 1976. 11. 6.선고 76다148 판결).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 멸하지 아니하고,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 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 멸되는 것은 아니나,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 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,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가 완성됨(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34866 판결).

#### ※ (3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

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함께 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를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 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